

2021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직원(일반직, 기술직) 채용 공고

국내 유일 해양환경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서 해양환경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1. 7. 29.
해양환경공단 이사장

1. 채용 개요

□ 채용부문

구분	직군	채용분야	인원(명)
1	일반직 5급	해상풍력(GIS)·행정	1
2		해상풍력(해양물리)·행정	1
3		방사성스트론튬(⁹⁰ Sr) 분석 및 평가·행정	1
4		토목·행정	1
5	일반직 6급	그린뉴딜·행정	1
6		환경방사능 분석 및 평가·행정	2
7		토목·행정	1
8		선박관리·행정	1
9	기술직(환경) 5급	폐유 수거사업 운영·관리	5
합 계			14

※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, 직무내용은 별도의 “직무 설명자료” 필히 참조

□ 채용분야별 응시자격

채용분야	직급	응시자격
해상풍력(GIS)·행정	일반직 5급	· GIS(지리정보시스템) 분야 관련 해당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※ 해당 전공: 지리학, 공간정보학, 공간정보공학, 해양공학
해상풍력(해양물리)·행정	일반직 5급	· 해양물리(수치모델링) 분야 관련 해당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※ 해당 전공: 대기과학(기상학), 물리학, 해양학, 해양공학, 지구과학
방사성스트론튬(⁹⁰ Sr) 분석 및 평가·행정	일반직 5급	<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> 1) 방사성스트론튬(⁹⁰ Sr) 분석 및 평가 분야 관련 해당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2) 방사성스트론튬(⁹⁰ Sr) 분석 및 평가 분야 관련 해당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후 방사성스트론튬(⁹⁰ Sr) 분석 및 평가 2년 이상 경력자 ※ 해당 전공: 물리, 화학, 원자력, 해양환경, 수산과학 ※ 경력자의 경우 채용분야 관련 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세부 업무수행 내역서 필수 제출(제출서류 검증 예정)
토목·행정	일반직 5급	·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해당 자격증 취득 후 토목 관련 분야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※ 해당 자격증: 토목기사 ※ 경력자의 경우 채용분야 관련 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세부 업무수행 내역서 필수 제출(제출서류 검증 예정)
	일반직 6급	·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해당 자격증 취득 자 ※ 해당 자격증: 토목기사
그린뉴딜·행정	일반직 6급	· 그린뉴딜 분야 관련 해당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※ 해당 전공: 지구환경, 해양학, 해양공학, 해양과학, 해양융합공학, 해양환경학, 지구해양과학, 해양기술학, 해양환경공학, 환경해양건설공학
환경방사능 분석 및 평가·행정	일반직 6급	· 환경방사능 분석 및 평가 분야 관련 해당 전공 학사학위 이상 취득 자 ※ 해당 전공: 물리, 화학, 원자력, 해양환경, 수산과학
선박관리·행정	일반직 6급	· 해기사 면허(기관)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자
폐유 수거사업 운영·관리	기술직 (환경) 5급	<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> 1)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 해당 자격증 취득 자 ※ 해당 자격증: 기계, 금속, 전기, 토목, 정보처리, 해양, 안전관리, 환경직무분야 2)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
□ 공통 자격사항

내용

□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▶ 응시자격 기준 시점: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시간) 이내
- ▶ 성별 무관(단, 남자에 한하여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가능)
- ▶ 공단 인사규정 제49조(정년)에 따른 만 60세 미만인 자
- ▶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
- ▶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
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-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“해임”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“파면”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
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미성년대상 성범죄자(영구 결격)

□ 가점사항

- 전형별 해당 항목별 적용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
 - 가점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시, 가장 높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가점을 적용함

구분	적용 대상		배점	
보훈 대상자	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·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		만점의 5~10%	
	구분	10%		5%
	국가유공자	· 국가유공자 본인 · 전몰군경·순직군경·4.19혁명 사망 · 순직공무원·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		· 국가유공자의 가족 ·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대 중 1인 · 전몰·순직 유자녀의 자녀중 1인
	독립유공자	· 애국지사 본인 · 순국선열 유족 ·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		· 애국지사 가족 ·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·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
비고	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)에 따라,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(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제외)			
장애인	·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		만점의 10%	
저소득층	①	②	만점의 5%	
	·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	·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	
북한이탈 주민	· [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]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		만점의 5%	
다문화가족	· [다문화가족지원법]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되는 자		만점의 5%	

※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 항목에 대한 공식 증빙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

□ 근무조건

신분	채용직급	정년	기본급여	근무지
정규직	일반직 5급	만 60세	약 3,591만원	본사 또는 소속기관
	일반직 6급	만 60세	약 3,019만원	
	기술직(환경) 5급	만 60세	약 2,228만원	소속기관 사업소

※ 기본급여 외 공단 제 규정에 따른 성과급 등 별도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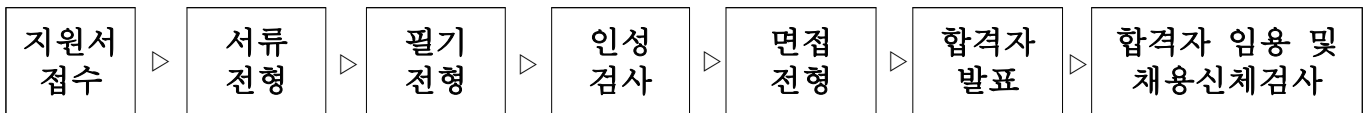
※ 보수 및 복리후생 등은 공단 제 규정에 따름

2. 채용절차(단계별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)

블라인드 채용 안내

-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채용을 진행함에 따라, 차별을 유발하고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(성별, 나이, 출생연도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사진 등)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
□ 전형 절차



□ 입사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1. 7. 29(목) ~ 8. 13(금) 15:00 까지
- 접수방법: 공단 채용사이트(<http://koem.ncsplus.co.kr>)

□ 서류전형

-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(블라인드 방식)
- 적격심사(한 가지 이상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): 해당 분야별 응시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,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방식(나이, 성별, 출신학교명,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 정보 미기재) 위배 여부, 입사지원서 상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의 불성실(동일 내용 반복 작성, 해당 항목 미 작성, 비속어 기재, 작성내용 표절 등) 여부

□ 필기전형

- (대상자)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
- (합격자 결정) 각 과목 득점이 4할 이상이고, 전 과목 총점이 6할 이상인 자 중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 결정(채용예정인원의 5배수)
 - ※ 동점자 복수합격 처리
 - ※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7조(시험의 합격자 결정)
- (실시장소 및 방법) 장소 추후 별도보고 / Off-line 시험
- (시험과목) 1교시: 직업기초능력평가(공통) / 2교시: 직무수행능력평가(채용분야별)

[1교시: 직업기초능력평가]

구분	50문항 / 50분 / 100점 / 객관식					
평가항목	일반직	의사소통능력	문제해결능력	정보능력	조직이해능력	직업윤리
	기술직	의사소통능력	문제해결능력	자원관리능력	조직이해능력	직업윤리

[2교시: 직무수행능력평가]

구분	50문항 / 50분 / 100점 / 객관식		
일반직	해상풍력(GIS)·행정	5급	▶ 지리정보시스템, 공간정보공학, 해양학개론
	해상풍력(해양물리)·행정	5급	▶ 물리해양학, 해양계측학, 해양학개론
	방사성스트론튬(⁹⁰ Sr) 분석 및 평가·행정	5급	▶ 방사선 물리학, 방사화학, 방사선 계측학, 환경방사능학개론
	토목·행정	5급	▶ 응용역학, 토질 및 기초, 수리학 및 수문학
	그린뉴딜·행정	6급	▶ 해양생태학, 해양계측학, 해양학개론
	토목·행정	6급	▶ 응용역학, 토질 및 기초, 수리학 및 수문학
	환경방사능 분석 및 평가·행정	6급	▶ 방사선 물리학, 방사화학, 방사선 계측학, 환경방사능학개론
	선박관리·행정	6급	▶ 기관공학, 해사법규, 해사영어
기술직 (환경)	폐유 수거사업 운영·관리	5급	▶ 해양환경, 해양오염 관련 일반 지식 ▶ 해양환경관리법령 내 오염물질 수거·처리 관련 일반 지식 ▶ 폐기물관리법령 내 폐기물 관리·처리 관련 일반 지식

□ 인성검사(on-line)

-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(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)
 - 인성검사 미 응시자는 면접전형 참여 불가(불합격 처리)
- 인성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

□ 면접전형

- (대상자) 필기시험 합격자 중 온라인 인성검사 응시를 완료한 자
- (면접방식) 대면면접, 토론면접
 -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
 - 면접점수 합계(대면면접 50% + 토론면접 50%)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로 선정
- 면접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
 - ※ 채용분야별 면접대상 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 토론면접 생략 후 심층대면면접으로 실시
 - ※ 코로나-19 예방을 위해 면접대상자 중 유증상자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한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
- 합격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공단 인사 규정시행세칙 제18조(동점자의 합격결정)에 따라 합격자 결정
 - 1) 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, “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”, 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”에 적용을 받는 자
 - 2)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많은 자
 - 3)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

□ 합격자 발표 및 임용

- 최종 합격자 개별 통지 및 공단 임용
- 최종 합격자 대상 채용신체검사 실시
 -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는 합격을 취소함
-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

3. 전형일정(안)

내용	일정
▶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	2021. 7. 29(목) ~ 8. 13(금) 15시 까지
▶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1. 8. 24(화)
▶ 필기전형	2021. 8. 28(토)
▶ 온라인 인성검사	2021. 9. 2(목) 09시 ~ 9. 3(금) 18시 까지
▶ 면접전형	2021. 9. 9(목)
▶ 최종합격자 발표	2021. 9. 17(금)
▶ 합격자 임용 및 채용신체검사	2021. 9. 27(월)

※ 상기 일정은 코로나-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변경사항 발생 시 공고 예정)

4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공통	▶ 입사지원서,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※ 채용사이트를 통한 작성 및 제출
면접대상자	▶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사항, 학력사항, 경험사항 증빙 각 1부 ▶ 가점부여 대상자 증빙 1부
최종 합격자	▶ 기본증명서(주민등록번호기재분) 1부 ▶ 가족관계증명서 1부 ▶ 주민등록등본 1부 ▶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분) 1부 ▶ 가점부여 대상자 증빙 1부(인적사항 미삭제 분) ▶ 반명함판 사진 3매 ▶ 통장사본 1부 ▶ 채용 신체검사서(국·공립병원, 대학병원 등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) 1부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건(진위여부 검증 예정)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
※ 제출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※ 면접대상자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이후 제출(별도 안내 예정)

- 유의사항 : 블라인드 채용전형 방식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 인적사항(이름, 성별, 나이 및 출생연도, 출신지, 출신학교, 사진 등)은 삭제(마스킹 등)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5. 기타사항

- 공단은 **블라인드 방식에 따라 채용을 진행**하며, 매 전형별 차별을 유발하고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(성별, 나이, 출생연도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사진 등)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-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을 불가하며, 해당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(부적격 처리)합니다.
-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증빙서류 제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, **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후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**될 수 있습니다.
-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등에 학력 등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**최종 합격 후 신원조회 상 특이사항 발생 시 임용을 취소**할 수 있으며,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숙소제공은 없습니다.
- 채용시험 불합격 후 채용결과, 채용비위, 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.
 - 신청 방법: 별지 서식1(이의신청서) 작성 후, 전자우편(insa@koem.or.kr) 제출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입사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드립니다.
 - 신청 기한: 입사지원자의 합격여부가 결정된 날 이후, 14일부터 3개월까지
 - 신청 방법: 별지 서식(반환청구서) 작성 후, 공단 채용담당자 이메일(insa@koem.or.kr) 또는 팩스(☎ 02-3462-7707), 등기우편으로 제출
 - 우편 발송주소: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, 해양환경공단 인적자원팀
 -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.
 - 천재지변 및 공단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, 공단은 채용 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기타 채용 관련사항은 채용사이트 Q&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서식1]

해양환경공단 채용 이의신청서

신청인 정보	응시 분야			
	성명		수험번호	
	연락처		전자우편	
이의신청 내용	관련 내용 상세하게 기재			

년 월 일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※ 유의사항

- 이의신청 사유 및 해당 채용전형과 관련 없는 내용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심사위원 성명, 타 응시자 전형결과 등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전자우편으로 시행합니다.
- 이의신청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.

[별지 서식2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